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3. 3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년 3월 27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3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2020. 3.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을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구민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내용 신설
 - 제6조제5호를 제6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하는 내용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모들이 육아로 인한 노동의 중단 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만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개학 연기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일과 자녀 양육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임.
 -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 기업 생산성 등과 같은 노동 시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3 호
----------	---------

제출연월일: 2020. 3.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을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구민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내용 신설

- 1)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5.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0. 3. 24. ~ 3. 26./ 3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취업 지원 사업)</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생 략)</p>	<p>제6조(취업 지원 사업)</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2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 비용 발생: 구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2. 비용추계 기준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구민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1일 5만원, 최대 25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급 일수,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산출내역: 1,600명 × 5일 × 50,000원 = 400,000천원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구비	400,000					400,000
	○						
	소계(a)	400,000					
세출	○ 가족돌봄비용	400,000					400,000
	○						
	소계(b)	400,000					
□ 총 비용(a-b)		0					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400,000					400,000
합계		400,000					400,000

6. 추가의견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휴원·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추진으로 더 많은 구민들에게 취업 기회 지원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이정왜
연 락 처	02-2670-4103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